

코로나19 의료폐기물 임시배출자(소방서) 등록 안내

< 공지사항 >

◇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임시배출자(소방서) 등록

- 일시 : '21.1.12. ~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
- 목적 : 소방서에서 확진자 이송시 발생한 폐기물 등 코로나19 폐기물의 신속안전처리
- 확인사항 :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[별표5] 및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」 등 준수, 코로나19 폐기물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활용

- 절차

- ①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7조제5항 및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8조의2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(지자체)에 ‘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’ 을 받아,
- ② 한국환경공단(팩스 0505-822-7800, 메일 kimjiwon@keco.or.kr)으로 발송

※ 코로나19 의료폐기물 신속처리를 위해 선 조치 후 행정처리 허용

◇ 코로나19 격리의료폐기물 관리강화

구분	배출자 보관	운반	처리
격리폐기물 현행규정	- 7일까지 보관 가능 - 합성수지 전용용기 - 전용 보관창고 (조직물류 냉장보관) - 보관창고 소독	- 냉장운반 - 임시보관(2일)	- 처리기한 2일 - 전용 보관창고 (조직물류 냉장보관)
격리폐기물 관리강화	- 당일 위탁처리 (1~2일 이내 보관) - 냉장보관 원칙 - 전용용기 투입전 후 소독	- 임시보관 금지, 당일 운반 - 사용시마다 차량악물소독	- 당일 소각처리

* 기타 문의사항은 032-590-4265, 427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